

# 「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영태, 김원섭, 소진혁, 이정희,  
정지원 의원 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마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추 은 희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(안 제5조)
-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(안 제7조)
-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(안 제8조~제16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 제24조
  -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, 제3조의2, 제26조의2
 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반 문화의 발전과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최근 영화, 게임, 음악, 공연, 개인 방송,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,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는 환경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문화 창작활동 지원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구미시에서는 청년 작가를 영입하고,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시 콘텐츠 관련 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: 원안가결